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72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송재봉·허성무·이재관

임호선 · 정진욱 · 이성윤

이연희 · 황명선 · 김우영

이수진 • 이광희 • 임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채용과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인재"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 이라 한다)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는 경우 그 첨단산업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해당 첨단산업인재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 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

- 이 다른 수도권 박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취업하거나 해당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여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 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 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지방소 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
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조선 설> 제116조의2(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첨 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인재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
기업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 하는 경우 그 첨단산업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해 당 첨단산업인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 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첨단산업기업사업 장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 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 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 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 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 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 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 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 른 수도권 밖 첨단산업기업사 업장에 취업하거나 해당 첨단 산업기업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 없이 개인지방소 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 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 직하여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 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 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 에게 개인지방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